

제1조 (용어의 정의)

"전시회"라 함은 "제22회 한국골프종합전시회(KOGOLF 2017)"를 말한다. "전시자(참가업체)"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주)코엑스", "매일경제신문사", "MBN"을 말하며, "주관사"라 함은 (주)그린웍스/엑스골프를 말한다. 주관사는 주최사의 위임을 받아 제반 계약 업무를 대표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의 성립)

본 참가신청 및 계약은 전시자(참가업체)가 참가신청(계약서)을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고 이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참가비(부스비용)의 30%(부가세 포함)를 계약금으로 납부할 때 성립된다. 전시자(참가업체)가 참가비의 잔금(부스비용)의 70%, 부가세 포함을 주최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 전시회 참가가 최종 확정되면, 이에 의거하여 주최자가 전시자(참가업체)에게 전시회 참가에 따른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주최자는 전시공간 배정 취소, 위약금 청구 등 계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전시자(참가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전시공간 배정)

주최자는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규모, 전년도 참가실적, 전문관 구성, 전시품 성질 등 제반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전시자(참가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주최자 혹은 GSC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참가업체)에 할당된 공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참가업체)는 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설치 및 철거)

전시부스의 설치 및 철거(전시품 반입/반출 포함)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참가업체)는 자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참가업체)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주최자 혹은 GSC는 전시자(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전시자(참가업체)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참가업체)가 부담한다. 부스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 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6조 (주최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참가업체)는 주최자가 부스 내 정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KOGOLF 2017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품 제한 및 전시실 관리)

전시자(참가업체)는 명시한 전시품을 할당된 전시공간 이내에서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시자(참가업체)의 활동은 할당된 전시공간 이내이어야 한다. 또한, 전시품의 분실, 훼손 및 도난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참가업체)에게 있다.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 지나친 소음 등 타 전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8조 (전시부스 양도의 금지)

전시자(참가업체)는 기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최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현장판매 금지)

전시회 참가목적은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를 참관객에게 실연하는 데 있으므로, 전시자(참가업체)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단, 주최자 혹은 GSC가 별도로 정한 전시장 내 특별코너 등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 골프클럽 판매의 경우 4부스 이상 전시부스를 운영하는 업체에 한하여 자사 브랜드만 판매활동을 허용한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참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참가신청 해지)

전시자(참가업체)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주최자가 정한 전시회 운영규칙을 어길 경우, 주최자 혹은 GSC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규모축소 및 위약금)

전시자(참가업체)가 신청한 전시부스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동 위약금은 기 납부된 참가비로 우선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1) 2017. 1. 6 까지 일부 취소 시
취소면적/신청면적 × 참가비(조립식 부스비 포함) × 30%
- 2) 2017. 1. 7 부터 2. 17 까지 일부 취소 시
취소면적/신청면적 × 참가비(조립식 부스비 포함) × 70%
- 3) 2017. 2. 18 이후 일부 취소 시
취소면적/신청면적 × 참가비(조립식 부스비 포함) × 100%

제12조 (참가취소 및 해약금)

전시자(참가업체)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포기(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포기(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동 위약금은 기 납부된 참가비로 우선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1) 2017. 1. 6 까지 취소 시
참가비(조립식 부스비 포함)의 30% 납부
- 2) 2017. 1. 7 부터 2. 17 까지 취소 시
참가비(조립식 부스비 포함)의 70% 납부
- 3) 2017. 2. 18 이후 취소 시
참가비(조립식 부스비 포함)의 100% 납부

제13조 (불가항력)

주최자가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전시자(참가업체)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및 해석)

-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참가업체)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전시자(참가업체)는 전시회 개최최소인 코엑스전시장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최자가 정한 관계규정과 주최자가 적용하는 관계법규에 따른다.
- 3) 본 계약서 및 기타 계약문서의 해석에 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참가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최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6조 (청렴계약 이행)

주최자와 전시자(참가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 및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